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제2항 제2호 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직할시 이상 지역”을 “특별시·직할시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4호 다음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제1항 단서 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 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제38조의 2중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7조(공유재산 심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u>매각</u>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공유재산 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1.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u>사용허가</u>에 관한 사항 3.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u>직할시 이상 지역</u> : 3백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3. (생략) 4. 시가 <u>3백만원</u> 이하의 기타재산 ④ (생략)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1. <u>특별시·직할시 지역</u> : 3백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3. (현행과 같음) 4. 시가 <u>1천만원</u> 이하의 기타재산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 ② <u>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u>	제13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중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 구에 소재하는 압중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1. 제38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압중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삭 제)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 발생한 경우
(신 설)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 설)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도지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분 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u>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u> ③~⑦ (생략)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u>취락개선사업에</u> ② <u>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u> ③~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요율을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제38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중략) 1~3. (생략)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중략) 1~3. (현행과 같음)